

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정의)</p> <p>본 세칙에서 “피감기관”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원회, 상설위원회 2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학생회, 동아리연합회 3. 전문기구: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화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 4. 특별기구 5.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6. 그 밖에 「학생회칙」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	<p>제4조(정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세칙에서 “피감기관”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구: 총학생회장단, 중앙집행위원회, 상설위원회 2. 자치기구: 학부·학과학생회, 새내기학생회, 동아리연합회 3. 전문기구: 문화자치위원회, 소통국제화위원회, 학생·소수자인권위원회 4. 특별기구 5.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6. 그 밖에 「학생회칙」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2. 본 세칙에서 “회계 담당자”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 본 세칙에서 “회계 책임자”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.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2(임시위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. 2.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.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. 3.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

	<p>대회까지로 한다.</p> <p>4.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따른다.</p>
<p>제14조(겸직 금지)</p> <p>감사위원은 <u>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.</u> 단, <u>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.</u></p>	<p>제14조(겸직 금지)</p> <p>감사위원은 임기 중 <u>피감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.</u> <단서 삭제></p>